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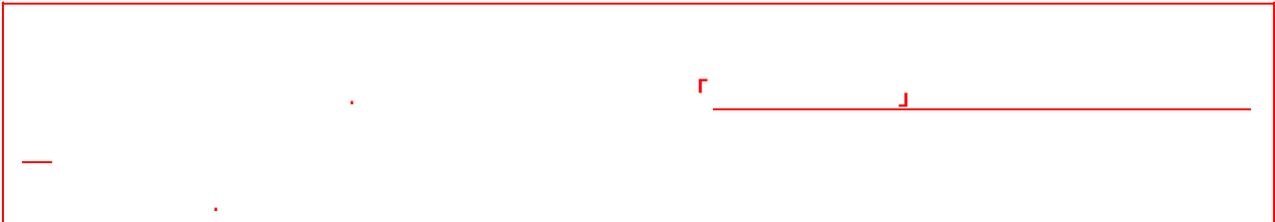
UBS

1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UBS아름다운미래로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하나UBS자산운용’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회사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 나 UBS아 름 다 운 미 래 로 채 권 혼 합 투 자 회 사 제 1 호

투자회사명	하나UBS아름다운미래로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
자산운용회사명	하나UBS자산운용주식회사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p>(주)하나은행 (☎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p>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회사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6월 20일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 · 지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ubs-hana.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I. 투자회사의 개요

상호, 존립기간, 분류, 자산운용회사, 최초 설립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산사유

II.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주주 유형,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평균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주식의 매입 · 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히 알고 싶다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매입관련 유의사항, 환매관련 유의사항,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I. 자산운용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III. 자산보관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제4부. 주주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I.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정기 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회사의 개요(☞ 본문 6쪽)

1. 상 호 : 하나UBS아름다운미래로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자산운용협회코드: 59476)
2. 존립기간 : 정관 제65조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
3. 분 류 : 증권투자회사, 추가형, 개방형, 채권혼합형
4. 자산운용회사 : 하나UBS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 본문 6~9 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주로 채권에 자산총액의 80%~95%수준에서 투자하고, 업종 대표주, 배당주 등 상장주식에 10%수준을 포함하여, 공모주 등 주식에 20%이하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추구 하는 것이 목적 - 비교지수: CD*70%+KOSPI지수*30% (비교지수는 하나UBS자산운용 홈페이지(www.ubs-hana.com)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매매는 단기시장상황 예측에 따른 딜링을 지양하고, 채권매입 후 보유(Buy & Hold) 전략을 추구 - 업종대표주, 고배당, 실적개선, 저평가된 배당주, IPO과정에서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으로 기업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공모주 등에 투자
3. 주요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3등급으로 중간위험 수준 -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 등을 통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ubs-hana.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4.30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팀운용)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성창훈	40	부부장	25개	10,324억	서강대 경영학과 주식투자분석 2년 주식운용 3년

* 투자회사의 운용은 2인 공동운용이며, 상기인은 투자회사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	최근1년 2007.3.2~ 2008.3.1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립일 이후 2006.3.2~ 2008.3.1
투자회사	8.57	-	-	-	8.67
비교지수	10.51	-	-	-	9.35

*비교지수 : CD*70%+KOSPI지수*30%, *단위 : % * 펀드의 실제운용개시일은 2006.8.23일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본문 9~12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주주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¹⁾	365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및비용	보수	자산운용 보수	연0.3585%
		판매 보수	연0.8365%
		보관 보수	연0.040%
		사무관리 보수	연0.018%
		보수합계	연1.253%
	기타비용 ²⁾	연0.109%	
총보수·비용비율 ³⁾		연1.362%	

주 1) 환매수수료는 해당 환매시점에 일회적으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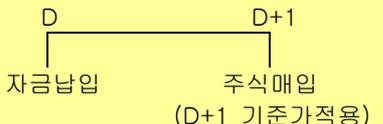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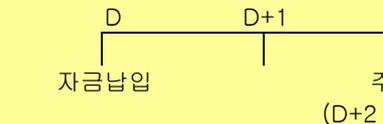
주 2)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펀드의 과거실적추정치임

주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내며, 실제 지출되는 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과세 : 투자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년 6월 현재 개인 15.4%)**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은 본문참조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5영업일(D+4)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1588-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 (고객 성명)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 _____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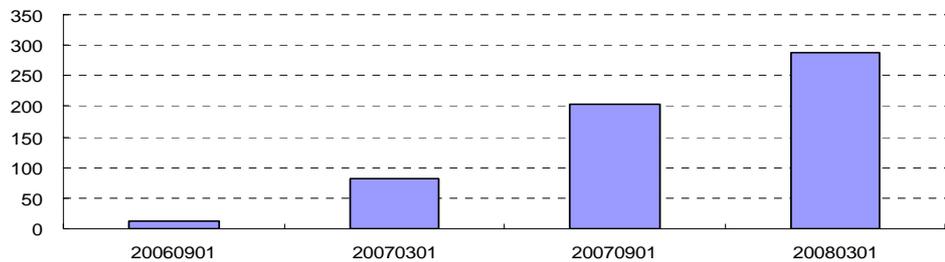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 투자회사의 개요

- | | |
|---------------|--|
| 1. 상호 | 하나UBS아름다운미래로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 |
| 2. 존립기간 | 정관 제65조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7.해산사유 참조) |
| 3. 분류 | 증권투자회사, 채권혼합형, 개방형, 추가형 |
| 4. 자산운용회사 | 하나UBS자산운용(주) |
| 5. 최초설립일 등 연혁 | 2006.3. 2.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채권혼합투자회사제2호 설립
2006.3.17. 금융감독원 등록
2006.8.22. 대한아름다운미래로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로 상호변경
2007.8. 1. 하나UBS아름다운미래로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로 상호변경 |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7. 해산 사유

-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
- 주주총회의 결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의 통지

. 투자정보

1. 투자목적

회사는 주로 채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및 A- 등급 이상 회사채)에 자산총액의 80%~95%수준에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업종 대표주, 배당주 투자를 위주로 상장주식에 10%수준을 포함하여 공모주 투자 등 주식에 20%이하,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운용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CD*70%+KOSPI지수*30%

(비교지수는 하나UBS자산운용 홈페이지(www.ubs-hana.com)에서 확인 가능)

2. 주요투자전략

(1) 채권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 듀레이션 매칭에 의한 만기 보유로 수익률을 확보
- 국고채, 통안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우량등급의 은행채에 투자
- 신용도,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입 종목을 선정

매매전략

- 단기시장상황 예측에 따른 딜링을 지양하고, 채권매입후 보유(Buy & Hold) 전략을 추구

(2) 주식투자

일반주식투자(공모주이외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

- 업종대표주, 고배당, 실적개선, 저평가된 배당주 주식 투자

공모주 운용계획

- IPO과정에서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으로 기업적정가격산출
- 공모주에 대한 적정가격 제시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의무보유기간을 가급적 단기화하여 고점매도에 주력

(3) 파생상품

회사의 파생상품 투자는 보유 자산의 가치변동위험 관리를 위한 헤지거래, 전술적 자산배분 및 현선물간 가격과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 등 범위내에서 운용됩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떤 관련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시장 위험 및 개별위험

회사재산을 상장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채권투자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13~1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회사는 주로 채권에 자산총액의 80%~95%를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공모주 등 주식에 10%~20%수준으로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른 원본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등급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위험을 가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 등을 통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상품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하나UBS 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하나UBS China 주식투자신탁(제1호) - 하나UBS FirstClass 에이스주식투자신탁
2등급	높은위험	- 하나UBS 뉴오토시스템 주식혼합투자신탁(제1호) - 하나UBS 가족사랑짱적립식 주식혼합투자신탁(K-1호)
3등급	중간위험	- 하나UBS 뉴오토시스템 채권혼합투자신탁(제1호) - 하나UBS 아름다운실버배당 채권혼합투자신탁(제1호)
4등급	낮은위험	- 하나UBS 클래스원 장기채권투자신탁(S-1호) - 하나UBS 스마트 단기채권투자신탁(S-9호)
5등급	매우낮은 위험	- 신종 MMF (S-36호) - 클래스원 신종 MMF (K-5호)

(주) 상기 예시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하나UBS자산운용 내부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공고일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이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ubs-hana.com)·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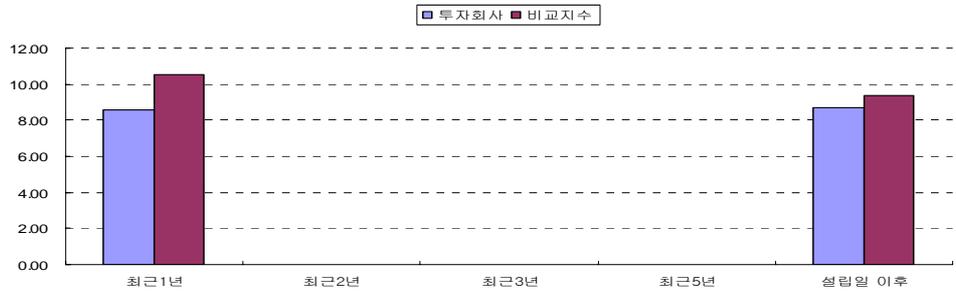
(2008년 4월30일 기준)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경력
성창훈	주식 운용팀	부부장	10,324억	서강대 경영학과 주식투자분석 2년 주식운용 3년

7. 투자실적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연도	최근1년 2007.3.2~ 2008.3.1	최근2년	최근3년	최근3년	설립일 이후 2006.3.2~ 2008.3.1
투자회사	8.57	-	-	-	8.67
비교지수	10.51	-	-	-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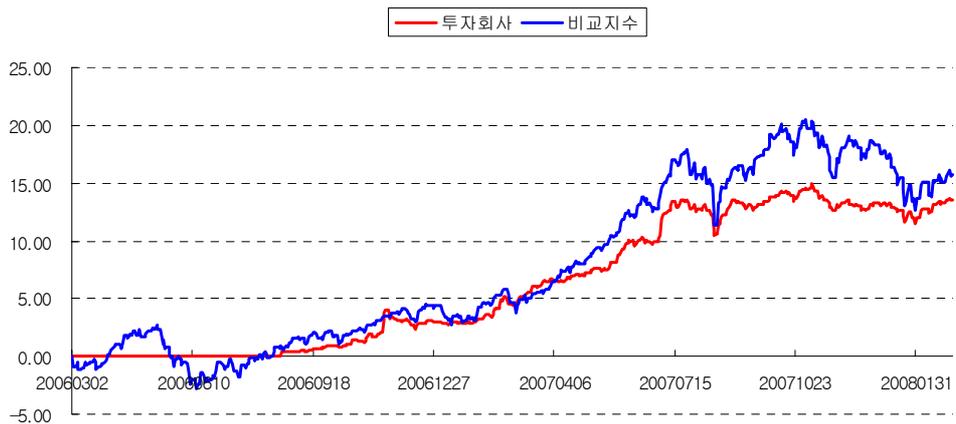


□ 연도별 수익률
(단위 : %)

연도	최근1년차 2007.3.2~ 2008.3.1	최근2년차 2006.3.2~ 2007.3.1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투자회사	8.57	4.55	-	-	-
비교지수	10.51	3.68	-	-	-

*상기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운용실적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co.kr)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는 CD*70%+KOSPI지수*30%이며, 실제 운용개시일은 2006년 8월 23일임



· 수수료 · 보수, 과세

1.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365일 미만 : 이익금의 10%
	합계	-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3585%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8365%
	자산보관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018%
	기타비용 ¹⁾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0.109%
	총 보수 · 비용비율 ²⁾	순자산총액의 평잔의 연 1.362%

1)유가증권 거래비용 등 경상적 ·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과거 실적의 추정치임

2) 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

2. 투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1,000만원 투자시 비용 예시>
(단위: 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9,576	440,015	771,248	1,755,578

*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회사가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회사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각 결산기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경우 환매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 개인 주주에 대한 과세

배당소득세

- ①회사와 같은 개방형 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시의 이익은 장외주식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②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는 투자회사 보유주식(상장 주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 차익은 제외되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상품선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됨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①개인투자자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의 대주주(투자회사 지분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주주)인 경우에도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음

- 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①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②법인주주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자 소유지분과 합하여 투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주주로서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면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표에서 제외

※상기내용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매 입

. 주식의 매입 · 환매, 분배

□ 주식의 매입절차 등

(1)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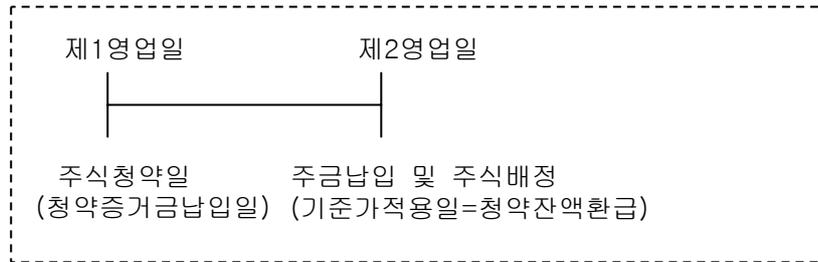
(2) 청약취급처 : (주)하나은행 본·지점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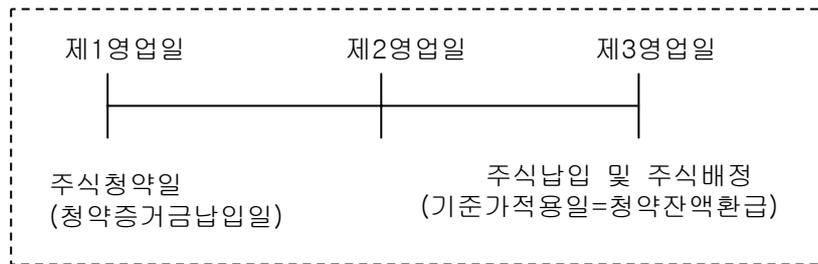
※취소(정정)는 당일 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식 매입시 기준가격 등

(1) 오후 5시 이전 청약을 신청한 경우



(2) 오후 5시 경과후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2 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매입관련유의사항’ (18쪽)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환 매

□주식의 환매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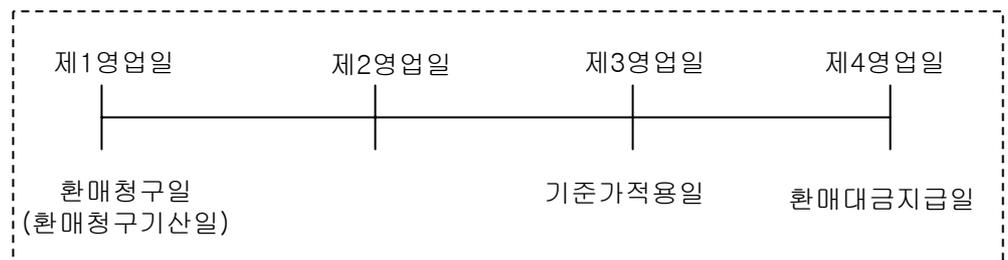
투자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식을 매입한 판매회사에 가서 영업시간중에 보유주식의 전부 혹은 일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찾고자 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고자 하는 회사 주식의 수를 청구하는 것임

□ 주식의 환매시 기준가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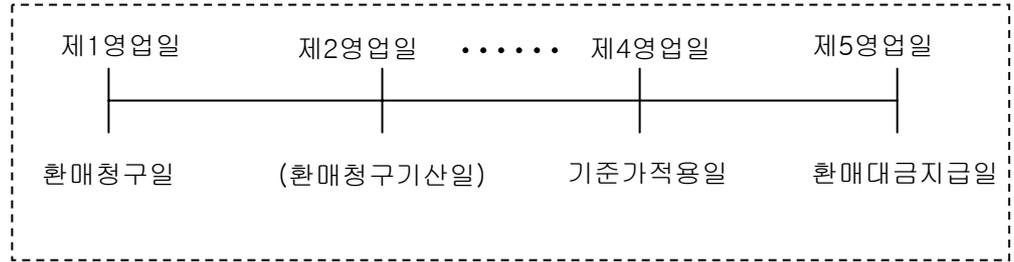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환매수수료

(1) 환매수수료 징수 목적 : 투자자의 빈번한 주식의 매입과 환매에 따른 불필요한 거래비용 방지 및 장기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규모 유지

(2) 환매수수료 :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 365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10%

(3) 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자산으로 편입한다. 다만 분배금으로 배당받은 주식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환매관련유의사항’ (18~19쪽)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1)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분배관련유의사항’(19~20쪽)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전략

(1) 채권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 듀레이션 매칭에 의한 만기 보유로 수익률을 확보
- 국고채, 통안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우량등급의 은행채에 투자
- 신용도,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입 종목을 선정

매매전략

- 단기시장상황 예측에 따른 딜링을 지양하고, 채권매입후 보유(Buy & Hold) 전략을 추구

(2) 주식투자

일반주식투자(공모주이외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

- 업종대표주, 고배당, 실적개선, 저평가된 배당주 주식 투자

공모주 운용계획

- IPO과정에서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으로 기업적정가격산출
- 공모주에 대한 적정가격 제시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의무보유기간을 가급적 단기화하여 고점매도에 주력적 단기화하여 고점매도에 주력

(3) 파생상품

회사의 파생상품 투자는 보유 자산의 가치변동위험 관리를 위한 헤지거래, 전술적 자산배분 및 현선물간 가격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 등 범위내에서 운용됩니다.

2. 투자 위험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투자위험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떤 관련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시장 위험 및 개별위험

회사재산을 상장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채권투자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른 주식 관련 투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항상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과 회사의 투자목적이 정확히 달성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u>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관련자도 투자자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u>

3.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30%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제 2 조제 1 항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
② 채권	95%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는 포함하고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③ 어음	40%이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이하 이 투자설명서에서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⑥ 수익증권	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수익증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이 투자설명서에서 “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법제 13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⑦ 투자증권 등의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제 72 조제 2 호 규정에 의하여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것
⑧ 주식, 채권 및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위탁증거금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외환선물 및 외환옵션
⑨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보유채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 72 조제 1 호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것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⑩ 기타		법시행령 제 108 조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가능

위 투자대상 중 ①호 내지 ②호의 투자는 회사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함.
 위 투자대상 중 ①호 주식 및 ⑥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①호의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위 투자대상 중 ①호 내지 ⑤호의 거래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3) 및 4)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환매청구가 각각 회사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4) 회사자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한도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을 반드시 참조

4. 투자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회사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자산보관회사에 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합니다.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등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주식,채권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채권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주식, 채권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주식, 채권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회사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그 시기는 법 제95조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다

만, 자산 평가와 관련된 관련법령 또는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동 개정된 바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상기의 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자산평가의 예외>

가. 상기에서 규정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 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등은 법인이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주식 및 채권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기여도부문, 회사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 주식운용지원팀, 채권운용팀에서 개별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주식운용본부, 채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시스템부문, 운용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 투자공학팀, 주식운용지원팀에서 개별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주식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등 장내파생상품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채권운용팀에서 개별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채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1) 주식유지 최저한도 : 1만주(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주식수가 1만주 미만인 경우 그 1만주 미만의 잔여 주식도 환매청구 해야 함)
- (2) 기타 : 회사는 회사자산 운용상의 필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회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 또는 계속해서 회사 주식의 매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주식의 환매연기

- (1)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회사 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 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가),(나)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2)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다)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3)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4)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가)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5)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 (가)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 (나)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상기(1),(4),(5)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분환매

- (1) 회사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된 환매연기사유 해당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분리 전 회사의 지분에 따라 별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을 계속하여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주주, 자산보관회사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함.

□ 환매제한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의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전전전영업일17시[오후5시]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 포함)과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매수한 경우
 - (2) 해산한 경우
 - (3) 회사의 순자산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4) 결산일 직전 제3영업일 17시[오후5시] 경과 후부터 제2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 (5)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로 합니다.

- (2) 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3)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UBS자산운용(주)(www.ubs-hana.com)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02-3771-7114)

2. 주요업무

-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기타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회사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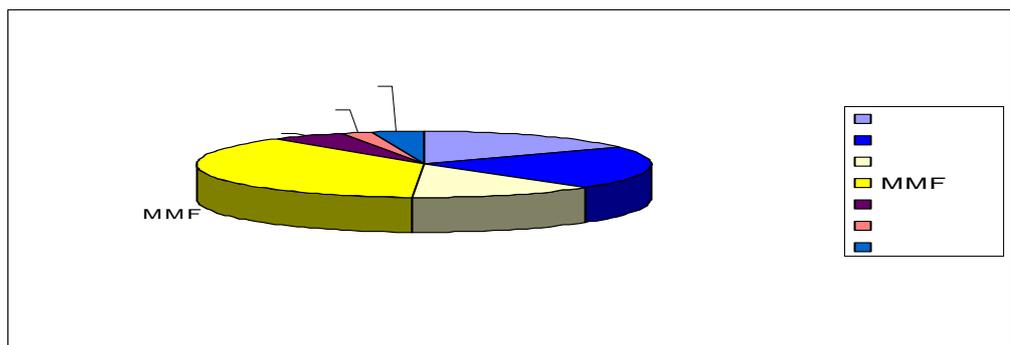
항 목	대차대조표		항 목	손익계산서	
	'07.03.31	'08.03.31		'07.03.31	'08.03.31
유동자산	75,718	71,972	영업수익	42,650	53,891
고정자산	3,693	9,476	영업비용	18,514	29,935
자산총계	79,411	81,448	영업이익	24,136	23,956
유동부채	7,767	13,364	영업외수익	143	58
고정부채	891	0	영업외비용	43	200
부채총계	8,658	13,364	경상이익	24,236	23,814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25,753	22,985	특별손실	-	-
자본조정	0	99	법인세	6,730	6,582
자본총계	70,753	68,084	당기순이익	17,506	17,232

4. 운용자산규모

(2008.5.31일기준)

(단위:억좌)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합계
수탁고	33,487	42,988	27,397	77,766	10,772	4,416	7,636	204,462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팀운용)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성창훈	40	부부장	25개	10,324억	서강대 경영학과 주식투자분석 2년 주식운용 3년
	이창배	39	차장	6개	10,691억	연세대 경제학과 채권운용 5년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www.hanabank.com)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2. 주요업무

-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 자산보관회사가 배당금 또는 환매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자산보관회사로부터 인도받은 배당금 또는 환매금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의 해산기준일 현재 회사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관 제 22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자산보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02-729-7978)

2. 주요업무

- 회사의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의 보관, 회사의 지시에 따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인수도, 이자 배당금 수령 및 유무상 증자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사자산의 운용에 관한 회사의 운용지시를 수행한 후 그 지시가 법령,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운용대상 및 방법, 운용제한 등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회사자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 제 123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펀드서비스(주) (www.kr.hsbc.com)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02-3771-9800))

2. 주요업무

-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이사회 및 감독이사의 업무보조, 문서 사무, 관련회사 관리 업무, 계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 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회사 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NICE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4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연 락 처	02-3215-1400	02-399-3350	02-739-359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06.16
등록일	2000. 6. 29.	2000. 7. 1.	2000.06.
자본금	30억원	50억원	48억원

2. 주요업무

- 채권평가회사의 투자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
 - ①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 ②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③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4부 주주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주주의 권리

1. 주주총회 및 의결권

□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법인이 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관회사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사항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변경
- 회사 존립기간의 변경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다만, 회사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 회사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 기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

□ 의결방법

-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합니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상기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상기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회사의 주주는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분배금과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관회사는 결산에 따른 결산분배금 또는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자산보관회사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자산보관회사로부터 인도받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일 현재 회사자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간접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책임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또는 주주가 이 회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6. 기타 주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보관회사의 승인을 받아 3 월에 1 회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 121 조제 1 항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업보고서

- 회사는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

- 회사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존립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의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감사인인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준가격계산서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판매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관회사보고서

-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정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 (2)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3)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4) 법 제 132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자산보관회사는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금융 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정관의 변경

- 정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변경.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합니다.

- (3) 회사 존립기간의 변경
 -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다만, 회사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5) 회사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 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추가로 공고합니다. 다만,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간접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 (다)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결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전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수시공시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상기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 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자산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

	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회사 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밀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